

여수 공무원은 아직도 전별금 받는다?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들에게서 전별금·여행경비·회식비 협찬 등을 받은 여수시 공무원들이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시가 인구 유입 실적 우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 평가 때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해 인근 순천시·광양시와의 갈등 야기, 공무원 사기 저하, 업무 기능 저하 등 다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내려졌다.

전남도는 5일 "여수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77건을 적발, 83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여수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공무원들의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가 문제로 지적됐다.

여수는 27개 읍면동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한려·중앙·문수·쌍봉·총무·월호동 등 6개 동에서 공무원들의 전별금·명절 선물 수수, 회식비 대납 등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33명이다.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무원들은 근무를 마치고 동을 떠나기 전 개최된

전남도 감사 부적정 사례 적발 77건 보니

주민에 5~10만원 현금 받은 공무원 "관행" 항변
50억 투자유치 1점 vs 인구 유입 2점 '이상한 가점'
순천 등과 인구 갈등...업무·사기 저하 부작용 지적

송별회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1인당 5~10만원씩 받았다. 전별금 총액은 255만원이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전별금 수수 시점이 해당 동에서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이므로 업무상 관련이 없으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변했다. 주민자치위원장 일부는 "전별금을 주는 게 죄가 되느냐"고 되레 전남도에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동장은 해외여행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0만원을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받았다.

여수시 월호동사무소 직원 5명은 15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여수시에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24개 읍면동 중 여천동, 삼일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직원 송별회, 체육대회 등 자체 행사시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각종 협찬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당수 공무원은 이러한 관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청렴 의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 시 인구 전입 가점 부여 방식도 지적됐다.

가산점 부여 방식이 객관성·적절성을 갖추지 못해 공무원 사기 저하, 업무 기능 저하, 인근 순천시, 광양시와의 갈등

초래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여수시는 인구유입 실적에 따라 21명 이상 2.0점, 16~20명 1.6점, 11명~15명 1.0점, 6명~10명 0.8점, 3명~5명 0.5점의 가산점을 주는데, 50억원 이상의 기업 투자 유치 실적을 올린 공무원에게 1점의 가점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지인 등의 주소를 여수로 옮겼다가 가산점을 얻거나 승진 임용 후 주소를 되돌렸을 때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공무원들의 무리한 전입으로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례가 다수 발생해 논란 발생이 예상되고, 인구 유입 실적 부담으로 본인의 업무 기능이 저하되는 등 다수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여수시보다 먼저 인구유입 가점 부여 제도를 시행했던 광양시는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2018년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현호 기자 khk@kwangju.co.kr

전남 3주택 8%·4주택 이상 12% 취득세

지방세관계법 개정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역인 전남의 경우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를 이 적용되고,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취득세가 과세된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7.10.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된 지방세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부동산 정책 발표 시 정부안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남도와 여권이 유사한 타 시도와 함께 이를 강력히 건의해 전남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역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에 해당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2%의 취득세가 과세된다. 특히 농어촌 주택 및 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은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등도 종가세 제외 주택으로 적용받게 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완화된 취득세율 개정으로 인해 전남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역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와 귀농인구 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투기억제는 물론 지방세입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시행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가 소유권 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도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증인 위촉방법, 추진절차 등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다.

또 최근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무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료의 30%를 감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를 7만원으로 확정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 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이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 마무리 된다.

정예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만큼 이번 기회에 많은 도민들이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방해대책위원 등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방해피해 보상을 80% 원상복귀 등의 내용이 담긴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AI 조찬 포럼 정례화...인재·기술·정보 교류 논의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기업과 대학, 기관들과의 유기적 교류를 위한 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광주시는 5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2차 인공지능 조찬 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6월 1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강연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

이번 재개된 포럼에서는 광주 동구 아이플렉스에 인공지능센터를 개소한 솔루션의 이경일 대표가 '인공지능과 산업

혁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을 통한 생산성의 변화, 하드웨어 혁신, 제조 혁신, 디지털 휴만의 미래 방향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포럼을 정례화해 인공지능 융합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인재, 기술, 정보 등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달 9일에는 이성열 SAP코리아 대표가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AI 기업, 유관 기관, 대학 등이 함께 모여 정보를 나누고 연대를 모색할 수 있어 포럼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광주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시술비 추가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난임 시술 추가 지원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난임 관련 사업은 시술 횟수와 임신 성공률 비례 여부, 중앙 정부와 지자체 지원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원 사업을 협의하게 돼 있다.

광주시는 광주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를 대상으로 연내 최대 4회, 평생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신선 배아 시술비 최대 150만원, 동결 배아 시술비 최대 70만원, 인공 수정 시술비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80%를 넘을 경우 지원액은 신선 배아 최대 120만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원, 인공 수정 최대 20만원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